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72호 2020. 12. 14.(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0-1466호)
-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1486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14 일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근거하여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을 위한 규정 개정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적용 (안 제5조)
- 「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에 따라 업무 처리한 경우 면책 요건 충족 (안 제5조)

○ 처분종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14조)

- 훈계 처분 시 훈계와 주의로 구분
- 훈계 : 비위나 잘못의 정도가 무거울 때
- 주의 : 비위나 잘못의 정도가 가벼울 때

3. 개정규정안

○ 불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ann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 054-650-6046, 팩스 : 054-650-6059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규 정 명 : 예천군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훈계는 훈계와 주의로 구분하며, 비위나 잘못의 정도가 무거우면 훈계로 처분하고 가벼우면 주의로 처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 ②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훈계는 훈계와 주의로 구분하며, 비위나 잘못의 정도가 무거우면 훈계로 처분하고 가벼우면 주의로 처분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경상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경상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등에 적용한다.

- ②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감사면책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감사대상)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3.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제5조(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경상북도 본청은 단위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경상북도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감사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를 그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한다.

- ③ 감사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접수된 사전 컨설팅감사를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① 도지사에게 인가·허가·승인·등록·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④ 인·허가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서 이뤄진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경우 감사관은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반려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의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의견서 작성 및 통보) ① 감사관은 제6조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자문) ① 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부서)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이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에 응한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이행결과의 제출)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적극행정에 반영한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의 효력) ①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2년마다 적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전파하며, 공무원 등의 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권익위 시정권고 등의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 마련 요청 관련 공문】

인쇄 : 하태경 / 기획감사실 (2020-12-08 10:38:18)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바다
대한민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권익위 시정권고 등의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 마련 요청(경상북도)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3. 위 추진방안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별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귀 기관에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봉화군은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
4. 이에 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른 조치가 자체감사 면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적극행정 추진방안 중 시정권고의견표명 감사면책 설명자료 1부.
2. 적극행정 추진방안(국무조정실)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경주시장, 영천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 문경군수, 성주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

민원조사기획 과 서기관 최명식 민원조사기획 전결 2020. 7. 8. 과 과장 임진홍

협조자

시행 민원조사기획과-2533 (2020. 7. 8.) 접수 기획감사실-6558 (2020. 7. 10.)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국민권익위원회) / www.acrc.go.kr

전화번호 044-200-7312 팩스번호 044-200-7928 / ace0109@korea.kr / 비공개(5)

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문서관리카드 기획감사실-6558 1/1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안내(감사원) 관련 공문】

인쇄 : 하태경 / 기획감사실 (2020-12-07 17:50:24)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안내 (감사원)

1.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17(2019.01.14.)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일선 행정 현장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3. 감사원에서는 적극행정지원단 내에 전담팀(사전컨설팅팀)을 구성·운영 중이며, 신청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각급 행정기관에서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4. 각 실과소 및 시군에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사실을 널리 알려주시어 적극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속기관(부서) 및 공직자 등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안내문. 끝.

경 상 북 도 제 시



수신자 청내 실과장,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장, 의회사무처 장(청구담당관), 시군(감사부서)

★지방행정주
사 박원석 감사관 전결 2019. 1. 14.
이창재

협조자

시행 감사관-766 (2019. 1. 14.) 접수 기획감사실-488 (2019. 1. 15.)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청 감사관 / 403

전화번호 054-880-4354 팩스번호 054-880-4359 / pws77@korea.kr / 대국민 공개

문서관리카드 기획감사실-488 1/1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박물관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코자 함.

2. 주요내용

○ 박물관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45조)

-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시 필요한 경비,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3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 문화 관광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 054-650-8314, 팩스 : 054-650-8319
- 전자우편 : kwbr092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박물관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코자 함

2. 주요내용

- 박물관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45조)
 -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시 필요한 경비,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
- 「평생교육법」 제16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23,5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12월 중 입법예고 실시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사. 성별영향평가 : 12월 중 주민복지실 의뢰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비 지원 등) 군수는 박물관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박물관 교육 관련 국내·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3.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경비 지원 등) 군수는</u> <u>박물관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u> <u>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u> <u>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u> <u>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1.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 개최</u> <u>2. 박물관 교육 관련 국내·외</u> <u>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u> <u>실비</u> <u>3.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u> <u>자 재료비 지원</u>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박물관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안 제4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박물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나라사랑 아카데미(강의 및 현장답사 등)
운영에 드는 준비물 및 부대비용 등에 필요한 예산이 23,500천원으로
예상됨

4. 작성자

문화관광과 지방행정서기보 권보라 (054-650-8314)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 화 관 광 과	
연 락 처	650-8314